

대전지방법원 2021. 6. 24 선고 2020나114076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승욱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직

변 론 종 결 2021. 5. 27.

판 결 선 고 2021. 6. 24.

제1 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7. 1. 선고 2019가단111490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 2항 토지 지상 강파이프구조 단층 가설건축물(가축운동용) 603㎡와 같은 목록 기재 제3, 4항 토지 지상 철골구조 비닐지붕 단층 가설건축물 430㎡를 각

철거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고, 2019. 3. 26.부터 위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1일 19,07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는 이 법원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매경, 판사 이정호, 판사 신옥영

별지

부동산외 표시

1. 세종특별자치시 전 414㎡
2. 세종특별자치시 전 584㎡
3. 세종특별자치시 전 428㎡
4. 세종특별자치시 전 287㎡, 끝.

2